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부구청장	
김지현	조민숙	심진숙	도일환	09/09 김병환	
협 조	통합조사관리1담당 代최종남 통합조사관리2담당 代임인순 자활주거담당 박종학				

문서번호	생활보장과-31368
결재일자	2015.9.9.
공개여부	부분공개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사항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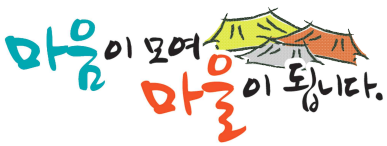

2015. 9.

교육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

맞춤형 복지급여 추진사항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14.12.9)되어 2015.7.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제도 개편을 몰라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급여 관련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림.

Ⅰ "맞춤형 급여제도" 개요

기본방향

○ 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선정기준

○ 급여수준 현실화 : "최저생계비"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 급여간 연계·통합 강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주요 개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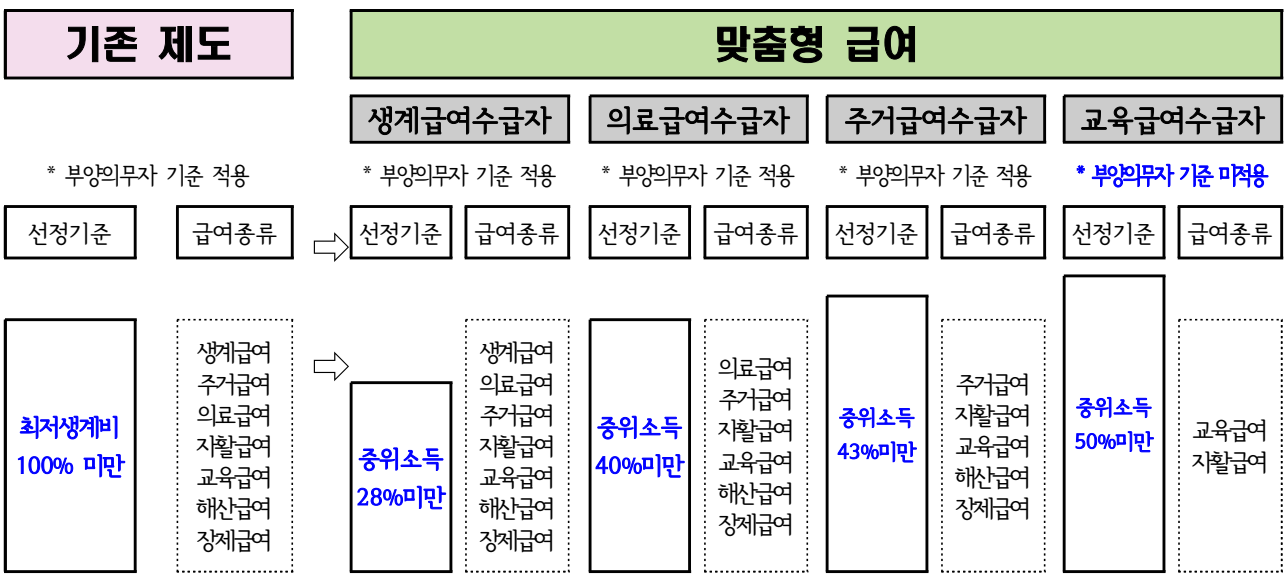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 도입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수급자 (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 (4인가족)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사각지대 해소”

- 소득기준 완화 [290만원이상 ☞ 485만원이상 (부양의무자 4인기준)]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기준완화 (가구원수 별도로 중증장애인수 추가)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 (수급자수) 약 4천가구 증가(‘15.1월 현재 7,057가구 ⇒ 11,079가구)예상됨

❍ (예산관련) 약 13,807,975천원 증가(‘14년 30,338,480천원 ⇒ ’15년 44,146,455천원)예상됨

☞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관점(중위소득) 반영으로 보장성 강화**

Ⅱ 급여별 주요 변경사항

주거급여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고, 자가가구 수선 유지 급여 경우 기존 5개부처의 유사 주택개량 사업을 통합 일원화 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주택 개량 및 실질적 주거 보장을 강화시킴.

❍ **주거급여 지급**

- **임차급여** (지원대상 : 임차가구 및 사용대차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190,000**	**220,000**	**260,000**	**300,000**	**310,000**	**360,000**
사용대차가구 (무료임차가구)	114,000	132,000	156,000	180,000	186,000	216,000
개편전주거급여	110,003	187,303	242,304	297,306	352,308	407,309

※ 임차급여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을 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클 경우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0.3)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 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 수선유지 급여 (지원대상 : 자가가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350만원(3년)	650만원(5년)	950만원 (7년)
수선 내용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설 -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교육급여

❍ 소관부처 변경(보건복지부 → 교육부) 및 보장기관 변경 (자치구 → 교육청)

❍ 교육급여 지급 및 관리 : 자치구 → 학교 · 교육청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Ⅲ 맞춤형 급여 현황

성북구 현황

❍ 개편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7,172세대 / 10,395명 (2015.6.30.기준)

❍ 맞춤형급여 신규수급자 책정현황

구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비고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5.9.4기준	223	338	271	438	255	420	42	127	

자치구별 맞춤형급여 신청 및 보장결정 현황 (2015. 9. 4기준, 단위/명)

○ 맞춤형급여 신청현황 : **5,962명** (순수 신청인원 25개구 중 7위)

○ 맞춤형급여 보장결정 현황 : **1,460명** (처리율 **24.49 %,** 서울시 평균 30.58%)

○ 직원 1인당 평균조사건수 : 127건(맞춤형 이전(1인당 13건) 대비 976%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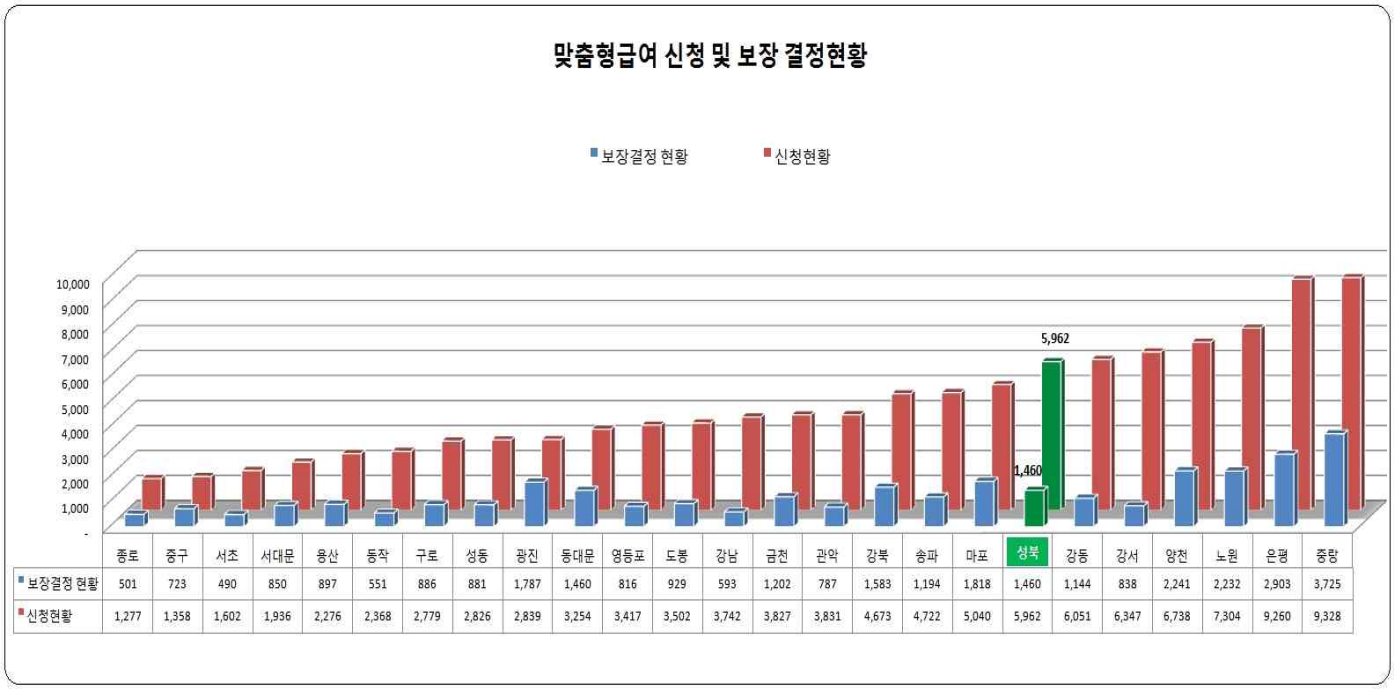

	종로	중구	서초	서대문	용산	동작	구로	성동	광진	동대문	영등포	도봉	강남	금천	관악	강북	송파	마포	성북	강동	강서	양천	노원	은평	중랑
보장결정 현황	501	723	490	850	897	551	886	881	1,787	1,460	816	929	593	1,202	787	1,583	1,194	1,818	1,460	1,144	838	2,241	2,232	2,903	3,725
신청현황	1,277	1,358	1,602	1,936	2,276	2,368	2,779	2,826	2,839	3,254	3,417	3,502	3,742	3,827	3,831	4,673	4,722	5,040	5,962	6,051	6,347	6,738	7,304	9,260	9,328

맞춤형 급여제도 예산

○ 맞춤형급여 개편후 급여지급 현황

- 생계 · 주거급여 지급결과

[단위: 가구/ 천원]

구분		가구	인원	금액	비고
생계급여	6월급여	6,113	8,879	2,071,679	
	7월급여	6,236	8,970	2,341,966	
	이행기급여	89	-	2,641	
	증감	**123**	**91**	**272,928**	
주거급여	6월급여	5,984	8,798	583,123	
	7월급여	6,283	9,396	867,169	
	이행기급여	635	-	23,224	
	증감	**299**	**598**	**307,270**	

○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국:시:구)	예산액	예산집행현황			증감(예정)액	비고
		집행액 (1-6월)	집행예정액 (7월-12월)	계		
생계급여 (60:28:12)	26,997,150	12,775,264	16,506,960	29,282,224	△2,285,074	
주거급여 (60:28:12)	15,755,905	3,570,221	6,931,133	10,501,354	5,254,551	
교육급여 (60:28:12)	1,240,100	523,730	918,370	1,442,100	△202,000	
해산장제급여 (60:28:12)	153,300	82,417	109,500	191,917	△38,617	
합 계	**44,146,455**	**16,951,632**	**24,465,963**	**41,417,595**	**2,728,860**	
	국) 26,487,873	국) 10,170,979	국) 14,679,578	국) 24,850,557	국) 1,637,316	
	시) 12,361,007	시) 4,746,457	시) 6,850,470	시) 11,596,927	시) 764,081	
	구) 5,297,575	**구) 2,034,196**	**구) 2,935,916**	**구) 4,970,111**	**구) 327,463**	

※ 개편후 수급자수 증가함에 따라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급여 예산 여유분이 있어, 주거급여 예산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의료급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국:시)	예산액	예산집행현황			증감(예정)액	비고
		집행액 (1-6월)	집행예정액 (7월-12월)	계		
의료급여 (50:50)	563,874	303,079	260,795	563,874	0	

Ⅳ 그간의 추진사항

추진실적

○ 맞춤형급여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T/F팀 구성

- 구 성 : 1팀장, 4개반 총 14명
- 운영기간 : 2015. 3. ~ 상황종료시
- 기능 및 역할 : 맞춤형급여 사전준비 종합상황 총괄, 인력 재배치, 조례정비, 여론 동향 파악 및 홍보, 주민홍보, 민원대응, 문제점 건의 등

❍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5. 5. 21 09:30~18:00
- 장 소 : 청기와 생명농원 (경기도 양평 소재)
- 참석대상 : 동 주민센터 및 생활보장과 직원 50명
- 주요내용
  · 주요제도 개선사항 및 맞춤형 개별급여 선정기준 등 사업내용 공유
  · 구·동 담당자간의 사업추진시 문제점, 협조사항 등 자율적 의견교환

❍ 맞춤형급여 민간보조인력 채용 : 20명

- 2015. 4. 20 ~ 4. 28 : 신청접수 및 자체심사
- 2015. 4. 30 : 대상자 선발
- 2015. 5. 14 : 민간보조인력 교육
- 2015. 5. 18 ~ 8. 17 : 동 주민센터 근무 (3개월간)
- 2015. 8. 18 ~ 9. 17 : 근로기간 연장 (1개월간, 17명 연장)

❍ 맞춤형급여 자체교육 운영

- 공무원 대상 교육 : 10회 308명 실시
- 민간인 대상 교육 : 23회 598명 실시

❍ 맞춤형급여 홍보

- 기존수급자 대상 홍보 :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개선 안내문 발송
- 신규수급권자 대상 홍보 : 기초생활수급 보장제외자, 다른 민간자원 연계지원자 등 제도시행으로 수급이 가능해진 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
- 일반주민 대상 홍보 : 지역신문, 성북소리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알리는 등 제도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실시
- 홍보물 제작 : 현수막제작 (24개), 홍보용 부채 제작 (3,500개)

❍ 맞춤형급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 동 공공복지팀장 및 담당자 회의개최 (7. 16 (목)) : **동별 목표제운영 및 신청 독려**
- 최근 3년이내 수급중지자 및 차상위계층 안내문 발송 : **3,752가구** (주민센터에서 발송)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주택바우처 대상 안내문 발송 : **1,044가구** (구에서 발송)
- **팀장별 동담당제 지정 운영** 및 일일추진실적 통보 (구→동)
- 사각지대 수급자 발굴 부진동(7개동) 현장점검 (2015. 7. 22)

Ⅴ 향후 추진계획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추진 : 2015. 12 .31까지

❍ 검토대상 :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등 21건 중

- 개정 필요 조례에 대하여 하반기 자치법규 개정 절차에 따라 담당 부서별 추진

맞춤형급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한 연계 지원

❍ **신규 신청자 또는 기존 수급자 중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탈락하는 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분들에 대한 지원 연계 필요**

→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차상위 지원사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공적지원제도 및 지역내 민간지원사업 적극 연계

❍ **신청접수 상담시 보장결정 제외 가능성과 향후 기준변경 및 각종 차상위 지원사업 연계 등으로 다른 도움가능성을 함께 안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붙 임 : 1. 동별 맞춤형급여 신청현황 1부.
2. 서울시 자치구별 보장결정 현황 1부. 끝.